

제 632 호
1977.12.28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1199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중 개정조례... 3
- 제 1200 호: 서울특별시 소개영업요금조례개정조례..... 3
- 제 1201 호: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5
- 제 1202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 5
- 제 1203 호: 서울특별시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6
- 제 1204 호: 서울특별시 청소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 6

◎ 규 칙

- 제 1729 호: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6
- 제 1730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386

제 439 호 :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8

◎ 도시계획 (서울특별시)

제 441 호 :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 승인 20

제 442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일부지적 승인 20

제 44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1

제 44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결정 및 지적 승인 21

제 44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22

제 446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 승인 23

제 44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23

제 44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24

제 449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공지지구) 변경 24

제 45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및 신설결정 25

제 45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25

제 452 호 : 재개발사업남대문로 3 가제 2 지구시행인가변경 (사업
기간 연장) 26

제 453 호 : 도시계획사업 (홍대앞, 미관광장) 실시 계획인가 26

제 454 호 :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결정 27

제 45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28

제 456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과 도시계획시설 (유통
업무 설비)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 29

제 457 호 : 1978 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고시 30

제 45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30

제 45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35

제 460 호 : 도시계획시설 (공지지구) 지적 승인 35

◎ 공 고

제 319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공고 36

제 323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 정지 지정 공고 37

제 325 호 : 78 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실시공고 37

제 326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 정지 지정 공고 39

제 327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 정지 지정 공고 40

제 328 호 : KS표지형 지체발판공고 40

제 329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41

예 규

제 368 호 : 물품분류에 관한 규정 4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199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수당등 지급) 위원회의 조사 연구 및 심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하는 일수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 2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소개영업요금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훈 인
197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200 호

서울특별시 소개영업요금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소개영업요금조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개영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에 관한 기준과 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요금의 한도와 수수방법) 소개영업의 요금은 의뢰인 쌍방이 각각 1/2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수수한 소개영업의 요금총액은 별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요금의 수수시기) 소개영업의 요금은 소개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계약 기타 목적인 바에 대한 완전합의가 이루어진후에 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소 개 영 업 요 금 표		
종 류	기 준	요 금
매매 (동산 , 부동산)	100 만원 미만	금액 $\times \frac{20}{1,000}$
	100 만원 이상 - 500 만원 미만	20,000원 + (금액 - 100 만원) $\times \frac{15}{1,000}$
	5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80,000원 + (금액 - 500 만원) $\times \frac{13}{1,000}$
	1,0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145,000원 + (금액 - 1,000 만원) $\times \frac{10}{1,000}$
	3,000 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345,000원 + (금액 - 3,000 만원) $\times \frac{7}{1,000}$
	5,000 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485,000원 + (금액 - 5,000 만원) $\times \frac{4}{1,000}$
	1 억원 이상	885,000원 + (금액 - 1 억원) $\times \frac{2}{1,000}$
임대차 전세 (동산 , 부동산)	10 만원 이상	금액 $\times \frac{20}{1,000}$
	10 만원 이상 - 100 만원 미만	2,000원 + (금액 - 10 만원) $\times \frac{15}{1,000}$
	100 만원 이상 - 500 만원 미만	15,500원 + (금액 - 100 만원) $\times \frac{13}{1,000}$
	5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67,500원 + (금액 - 500 만원) $\times \frac{10}{1,000}$
	1,000 만원 이상	117,500원 + (금액 - 1,000 만원) $\times \frac{7}{1,000}$
비고 : 이 표에서 "금액"이라 함은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금액, 전세금액을 말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춘 인
197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201 호

서울특별시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1호 「지하철분과위원회」를 「지하철분과위원회」로 하고

제4조 2항중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동장 전철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1인 이하로 구성하고 지하철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춘 인
197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202 호

서울특별시시민회관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비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8.1.1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로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춘 인
197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203 호

서울특별시유로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유로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강변 3로 (비교) 의 징수기간
"자 1971.1 ~ 지 77.12" 을 자 1971
.1 ~ 지 1983.12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204 호

서울특별시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729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11호 및 제 18 조중 "지하철
운영분과위원회"를 "지하철분과위
원회"로 하고 제 18 조 ㉞항을
㉞항으로하고 ㉞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과위원회의 직무를 신속, 능률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목소위원회, 계도 소위원회, 건축소위원회, 전기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77년 12월 28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30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3인 이내

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은 제 1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문화재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심비변상)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장사무처리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77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238
238f

○ 서울특별시훈령 제 479 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과징사무처리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징사무처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 조 (업종별 조정) ① 조례제 3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급
수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
정한다.

1. 시설소화전 - 기본요금은 1 년분을
매년 9 월 (10월납기) 에 일괄 조
정한다. 다만, 연습사용등 수시
사용분에 대하여는 수시 조정
한다.

2. 기타업종 - 격월조정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조정할수 있다.

1. 신 개전된 수전으로서 별책에
편철된 수전

2. 월 중간에 업종 변경으로 월
별 분리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 13 조 제 2 항 단서중 "가사용"
을 삭제한다.

제 13 조의 제 2 항 본문중 "가사용"
을 "시민수기용급수"로 하고 동
항 단서중 괄호()안의

"가사용"을 삭제하고 "조정실적"
을 "사용실적"으로 한다.

제 13 조의 2 제 4 항중 "실사용지침"
을 "실회전량"으로 한다.

제 14 조의 제 1 항 제 1 호중 "가사용"
을 "시민수기용급수"로 한다.

제 16 조중 "급수관 용구손로"를 "급
수관손로"로 한다.

제 19 조를 삭제한다.

제 40 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성완료된 독촉장은 독촉납기
마감 7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 5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0 조 (관리대상) 다량급수치는 월
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그 대상으로 관리한다. 다만, 시
민수거용 급수와 제 6 종은 그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8 조중 "관리계"를 "공무계"로한다.

제 59 조제 4 항을 삭제한다.

제 6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례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과
태로 처분 기준은 별표 제 2 호와
같다. 다만 2 회이상 상습적인
경우에는 5 배까지 과할 수 있다.

제 6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8 조 (재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사용하고 그 내역을 별
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이의 선
청 처리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85조중 "특수용"을 "제6종"으
로 한다.
제90조내지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위탁 대상업무) ①조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
탁대상 업무는 다음 금호의 같다.
1. 전 양수기 적임 및 수시 기검
업무
2. 정기, 수시 및 녹록고지서 송
달업무
3. 전호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②전항의 업무는 단순한 역무및
사실의 보고에 한한다.
제91조(위탁점검 정례일) 양수기
점검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위탁
실시하는 구에서는 제11조의 점
검정례일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
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정례일
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2조(위탁점검) ①급수양 점검
카드의 부분은 수탁법인의 점검원이
작성보관하고 이 부분에 의하여
제4장 점검조정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급수양 점검카드 부분에 특기사항
빠짐없이 기재한후 점검 일표와
점검일보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책임자는 이를 종합하여
점검당일중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급수양
점검카드부분을 원본에 이기하고
제4장 점검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당해 월분의 급수사용료를 조
정한다.
제93조(위탁수수료의 지급범위) 개
칙제25조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제
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상조치
한 경우와 고지서(독촉장고함)가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구청장
의 요구에 의한것이면 이를 지급하
여야 한다.
별표제2호, 제3호중 "가사용"을 "시
민구거용급수"로하고 별지제2호, 제
지 제5호, 제8호, 제11호, 제29호,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37호, 제38호, 서식중
"동구손로"를 "손로"로 "가입금"을
"시설부담금"으로 하고 별지제21호
서식중 "관리제"를 "공무제", "관리제
장"을 "공무제장"으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33
23/2

< 별지 제 2 호서식 >

정리번호	33	1978년도	정리번호	33	구	지역	책	PAGE	부번호	대
급수량집점카드										

구점	%	%	대장	수전	주소	농가번호(통반)	사용자
업태			번호	번호	소유자		

점월	점일	지침수	사 용 1		사 용 2		잡동월수	가구수	손 로	조정량	급수사용량	가압료	합계금	남 확 인	
			업종	사용량	업종	사용량								기	점점원

12															
11															
10															
9															
8															
7															
6															
5															
4															
3															
2															
78.1															
77															

45-10 계 632 호 시 보 1977.12.8

<별지 제 3 호서식> (전면)
 구 수도재량기 검침카드

급수업종	소재지	동로가번호(통번)				
수전번호	소유자	사용자				
검침			지침수	사용량(㎥)	검침원성명	비고
년	월	일				

요금표 (시민주거용급수)

㉞ 수도요금을 내실때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시고 5년간 보관하십시오.

<별지제 4 호서식> 1 일 경 침 및 조 정 집 계 표											
						계	계 장	과 장	국 장	구 청 장	결 재
구 역 책 197 . . .											
구분 업종	총전수	조정전수	급수사용료		손 로		가압료		전남기실적		
			조정량(㎥)	조정액	진수	금 액	진수	금 액	진수	조정량	조정액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제 5 종											
제 6 종											
제 7 종											
제 8 종											
사설소화전											
계											
미 조 정 내 역											
수 전 번 호	업종	주 소			사 용 자	구 경	미조정사유				

< 별지 제 5 호서식 >

업종별조정종합집계표

구

197

년기 (종합분)

작성자 직

성명

인

구분	정기조정			수시조정			당월조정합계			조정누계			감액			과오납		충당환불				
	건수	량	금액	건수	량	금액	건수	량	금액	건수	량	금액	건수	량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	종																					
계 2	종																					
계 3	종																					
계 4	종																					
계 5	종																					
계 6	종																					
계 7	종																					
계 8	종																					
시설소와전																						
급수사용료																						
가산금																						
합계																						
재료매각대																						
(양수기)																						
변상위약금																						
위환처분	과태료																					
	추징금																					
	추징금																					
가산금																						
손료																						
손료가산금																						
가압료																						
가압료가산금																						
기타																						
(잠수입포함)																						

합계표대조필 직명 성명 인

※ 감액 과오납, 충당 환불의 합계란중 상당은 누계, 하단은 당월 합계를 기입한다.
※ 변상 위약금란은 용구변상대 처제상금을 기입한다.

< 별지제 8 호서식 >

조 정 결 의 서

계	과장계장	관리계장	과장	국장	구 청 장 (분임장수관)	결 재	조정일자 남부기한 조정결의 대장정리	년 월 일	년 월 일	일 호 인
---	------	------	----	----	------------------	--------	------------------------------	-------------	-------------	-------------

조 정 내 역

년 월 남기 (정기분, 수시순)

관	항	계	항	목	조성 건수	조성 량	조정 금액	적 요
				계				
수익적수입	영업수입	급수수입	급수	자물료	계 1 주 계 2 용 계 3 용 계 4 용 계 5 용 계 6 용 계 7 용 계 8 용 관 8 용 사실소회전			
		수탁공사수입	신설공사수입					
			수선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	급수관손로					
			기타수수료					
			기타관수입					
			가압로수입					
	영업외수입	수입이지및배당금	예금이자수입					
		기타영업외수입	변상금및위약금					
자본적수입	유동자산수입	주요가미수금	과년도미수금	급수자물료				
		기타미수금	과년도미수금	기 타				
	잉여금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					

수 남 대 장													
계 일 은		한 일 은		농 협				금융기관수납액		구청리남		수남합계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별지 제 29 호서식 >

결 정 서 제 호

“ 처분취소청구 ”

이 의 신 청 인 :

처 분 청 :

위 이의 신청인이 197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97

장

<별지 제 30 호 서식>

이 외 신 청 처 리 부

번호	년월일	이 외 신 청 인		이 외 내 용	결 정 내 용	결	
		주 소	성 명			계	제 장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41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
급설비) 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법 제 13조와 전
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
다.

1977.12.21.

서울특별시장

가. 전기공급설비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및규모	비고
신설	성북변전소	도봉구쌍문동 388-1 외 2필지	18,926㎡ (5,725평)	
	154 KV	도봉구 쌍문동 388-1	연장 4,000m	
	송전선로	-쌍문동 산 325-1	철탑 15기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42 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일부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9 호 ('77.
4.18) 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시설 (주차장) 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
o 일부지적 승인조서

획법제 13조 및 전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인다

1977.12.21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주차장	강남구 양재동 536-3 일대	약 29,300 (8,863평)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4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96호('74.12.28), 제 416호('77.1.1.29)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
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명세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56 외 4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학교) 국민대학교지 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1,915평) 6,331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의1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이동화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일: 시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1978년 8월 30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평)	소유권
성북구 정릉동	861-1	대	21,591평중 912평	학교법인 국민학원
"	856	답	595평중 538평	" "
"	857-1	잡	34.9평중 34.9평	" "
"	857-2	대	39평중 39평	" "
"	858	잡	77평중 77평	" "

* 별첨 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4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에 의거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경기도고안군 군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2

서울특별시장

- 도로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로선조서 (별첨과 같음)

○로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1	1	10m	354	경기도고양군덕은리15-8	경기도고양군덕은리9-19	
"	"	2	1	8	500	" 산 74-8	" 산 2-4	
"	"	2	2	8	220	" 산 2-4	" 산 2-1	
"	"	2	3	8	120	" 산 2-1	" 산 2-28	
"	"	2	4	8	200	" 7	" 9-6	
"	"	2	5	8	360	" 15-7	" 9-19	
"	"	2	6	8	144	" 9-19	" 산 2-3	
"	"	2	7	8	174	" 7	" 산 2-1	
"	"	2	8	8	140	" 산 2-9	" 산 2-31	
"	"	2	9	8	135	" 산 9-3	" 9-2	
"	"	2	10	8	154	" 산 2-4	" 산 2-4	

◎ 서울특별시고시제 44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73 호 ('77.6.3)

로 일부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도시계획과와 시흥군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2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대로	3	87	25	1,970	광명리 430	광명리 295-1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46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24 호(77.12.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은평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2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지적승인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대지	운동장	서대문구 용암동 159-1	2,223 (672.5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 44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 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사항

에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3
 서울특별시장

○ 도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 m	220 m	신정동 87-11	신정동 87-9	위치변경
변경	"	"		"	230	"	"	
기정	"	"		2	30	황학동 689	황학동 689	폐지
변경	"	"		"	"	"	"	
신설	"	"		4	"	황학동 690	황학동 687	위세지노선대체도로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4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다음과같이 도시계획에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3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1		10m	430m	보광동 80-22	한남동 544-1	
"	"	2		8	70	면목동 639-7	면목동 699-1	
"	"	3		6	150	보광동 75-1	보광동 14-12	
"	"	"		"	30	한남동 684-63	한남동 684-7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49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공가지지구)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공가지지구)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제 41 호의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3.

서울특별시장

가. 공가지지구 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종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공가지지구	2종	종로구명창동 (북악터널서측)	625,700	
변경	"	"	"	615,000	감 10,70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45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및 신설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신설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6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일부변경및신설결정조서(별첨)
 별첨 도면표시와같은(도면생략).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2	18	28	3,100	원효로 1가	신 수 동	
변경	"	"	"	28 46	"	"	"	공덕동로타리 부근 270m 구간확폭
기정	"	2	19	28	1,475	만리동광장	공 덕 동 광 장	
변경	"	"	"	28 43	"	"	"	공덕로타리 부근 90m 구간확폭
기정	중로	1	14	20	3,300	용신역앞광장동측	대 흥 동	
변경	"	"	"	20 24	"	"	"	공덕로타리 부근 230m 구간확폭
신설	대로	3	122	22	250	공덕동(대 2-18)	공덕동(광로 43)	
"	중로	1	174	20	80	공덕동(대 2-18)	공덕동(대 2-19)	
"	"	2	156	15	180	도화동 17 (중 1-14)	공덕동 444 (대 2-18)	
"	"	2	157	15	150	도화동 18 (중 1-14)	공덕동 431 (대 2-18)	

㉕ 서울특별시고시제 451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4
 서울특별시장

○ 도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위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m		8 m	220 m	강서구신정동 87-11	신정동 87-9	폐 지
변경	소로	2 m		8 m	230 m	"	"	위치변경 (신설)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52 호

재개발사업 남대문로 3가 제 2지구 시행인가변경 (사업기간연장)

1. 서울특별시 제 31 호 (77.2.15) 로 실시계획인가된 재개발사업 남대문로 3가 제 2지구 사업기간을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제 16 조와 동법시행령 제 7 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가. 구역명칭 : 재개발사업 남대문로 3가 제 2지구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1 의 11 필지

다. 시행면적 : 3,000㎡ (907.5평)

라. 사업시행자 :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75.5.7 - 77.9.30

변경 75.5.7 - 78.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시행기간 변경사유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미확보 및 사업지구내 타인 소유 토지 등기미정리.
77.1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453 호

도시계획사업 (홍대앞, 미관광장) 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 168 호 (76.7.20)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12.27.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의위치 : 마포구 서교동 360~1, 36의 28</p> <p>2. 사업의종류및 명칭 : 흥대앞, 미관광장 보장공사.</p> <p>3. 사업규모 : 아스팔트포장 12⁵⁴㎡</p> <p>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p>	<p>5. 착수및준공예정일 : 77.12.27 ~ 78.2.28</p> <p>6. 사용또는수용할재산의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p>
---	--

1. 토 지

No	위 치	지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서교동 360-1	대	95. ⁴	마포, 서교 363-6	김 동 빈
				" " 360-4	장 승 환
				" " 360-1	신 승 균
2	360-28	"	37. ³ 132. ⁷	서대문, 연희 296-1	문 영 선

2. 건 물

No	위 치	구 조 건 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서교동360-1	세멘트복스벳트층 15. ⁴¹	서교 363-6	김 동 빈
2	"	세멘트복층조명복개 1층 10. ²⁷ 2층 10. ²⁷	" 360-4	장 승 환
3	"	1층 5 2층 5	" 360-1	신 승 균
4	서교동360-28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층 28. ²⁷ 2층 28. ²⁷	서대문연희 296-1	문 영 선
	계	102. ⁴⁹		

<p>◎서울특별시고시제 454 호</p> <p>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결정</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및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p> <p>○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결정조서</p>	<p>임사함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12.2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봉구관내 상계동, 월계동일대	약 10 만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455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결정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p> <p>가.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p>	<p>('77.3.16)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12.2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3	30	12	650	효자동(대3-1)	청운동(중2-56)	대 3-120 에 일부 구간흡수	
변경	중로	"	"	"	600	효자동(대3-120)	"		
신설	대로	3	120	25	40	1100	척선동(대1-40)		효자동(중3-30)
"	중로	2	150	15	300	효자동(대3-120)	청운동(중2-56)		
"	대로	3	121	25	650	휘경동(대3-40)	면목동(대3-42)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나.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대로	3	120	25-40	1100	적선동(대1-40)		효자동(중3-30)		
<p>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이를 고시한다.</p> <p>2. 결정된구역중 금번 지적승인에 서 제외된 구역에 대하여는 추 후별도 지적승인을 시행할 예정이다.</p> <p>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제 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12.2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고시제 456 호</p> <p>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과도시계획시 설(유통업무설비)일부변경및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용도지역 지적승인 및 도시제 획시설(유통업무설비)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엿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규정과 전설부고시 제41 호('77.3.16)권한위임 규정에 따라</p> <p>가. 유통업무설비 일부변경 결정조서</p>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강남구양재, 도곡, 개포, 역삼동일원						565,900	개략면적을 정산면적으		
변경	,				.		528,340	으로 결정(노면불변)		
나. 유통업무설비 지적승인 조서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강남구양재, 도곡, 개포, 역삼동일원						473,470			
다. 용도지역변경 지적승인 조서										
변경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주기-상업	강남구양재, 도곡, 개포, 역삼동일원						268,940			
숙지-상업	.				.		204,530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457 호 1978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p>	<p>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197 서울특별시장 구자춘</p>
--	--

회 계 별	예 산 액
일반회계	234,636,446,000원
특별회계	117,309,000,000원
국민주택사업비	23,736,000,000원
주택개량사업비	6,478,000,000원
토지구획정리비	7,500,000,000원
하수처리장비	2,800,000,000원
유로도로비	2,200,000,000원
외로시해구호비	732,000,000원
재해구호사업비	162,000,000원
수도사업	30,823,000,000원
지하철운수사업	42,878,000,000원
합 계	351,945,446,000원
도시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	11,669,000,000원

<p>◎ 서울특별시고시제 45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13 호 (77.11.28) 도시설계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시행령제 25 조와</p>	<p>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12.29. 서울특별시장</p>
---	--

<p>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개포동 457 의 72 필지</p> <p>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수도 전기 공업고등학교 신축건설</p> <p>다. 사업의 규모 (면적) : 29,985명</p> <p>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준</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p>	<p>착공 : 1978.2.1</p> <p>준공 예정일 : 1차 1978.9.30. 2차 1979.9.30.</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 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p>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지의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 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p>
<p>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p> <p>강남구 개포동</p>	

권리자		권리내용	지번	지목	비고
주소	성명				
도곡동193	최영자	가등기	485	전	
행당동37-79	나공성	•	488	•	
	김분순	•	480	•	
충로1가36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48	•	

(1) 입야권필지조서

강남구 개포동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강남구개포동	산97-1	임	4 무			비등기
	산98	•	3	개포동 503	석종필	
	산 102-1	•	33	이촌동 278-9	이근우	
	산 102-2	•	33	" "	"	
	산 104	•	6	천호동 412	김태성	
	산 106-3	•	7	광주시충정로3가26	윤은중	
	산 106-2	•	7	청파동 1가1-48	윤필중	
	산 106-1	•	24	오류동 13-8 2	이형찬	

(2) 토지 전필지조사				(개포동)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		비고
				주소	자성명	
강남구 개포동	471	전	523	하번동 55-3	민중현	
	472	"	485	신당동 43-12	김무정	
	469	"	132	개포동 500	석종학	
	467	답	327	역삼동 63	임현익	
	466-1	"	613	개포동 518	석귀복	
	466-2	"	378	신림동 104	김용필외 6인	
	466-3	전	170	갈현동 517-18	이동박	
	466-4	답	605	효자동 101-2	안종훈	
	465	"	619	역삼동 63	임현익	
	464	"	562	" "	"	
	463	"	404	개포동 500	석광원	
	462	"	1523	" 521	김창호	
	461	"	566	" 504	진영목	
	460	"	717	율지로 3가 259-7	강민택	
	458	"	240	개포동 497	조영현	
	459	"	730	신당동 291-24	조창환	
	485	전	407	개포동 500	조윤홍	
	484	답	788	" "	석광원	
	483	전	42	" "	"	
	487	"	425	" 495	석태완	
488	"	572	삼선동 4가 249	이진명		
491	"	1184	구로동 317-60	조윤진		
490	"	366	개포동 500	석성학		
489	"	431	용분동 1-63	석진우		
486	"	624	"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강개남포구동	450	담	322	개포동 497	조경술	
	451	전	476	" "	"	
	453	"	34	" 666	마영수	
	455	"	35	" "	"	
	456	"	95	" "	"	
	457	"	621	" 503	석종삼	
	454	"	155	신사동 196	이명복	

(3) 임야 매입지조서

(개포동)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강개남포구동	산 86-3	임	1,815	화곡동 105-495	송인춘외1명	
	산 87	"	315	원운동 184-3	이보령	
	산 88	"	480	군자동 324	김성기	
	산 93	"	694	궁정동 72	백정근	
	산 96-1	"	2,644	혹석동 29-79	조진실	
	산 97-2	"	5,672	개포동 503	석종필	
	산 99-1	"	113	사흥군산동면양리318-27	허종	
	산 101	"	1,190	금호동 1가1475	이성범	
	산 102-4	"	321	신길동 3212	주경성	
	산 102-3	"	2,281	용두동 236-57	김병수	
	산 103	"	140	청담동 23-2	함돈선외1명	
	산 105-1	"	5,869	개포동 504	석후균외1명	
	산 106-4	"	595	동소문동 1가90	김도진	
	산 109	"	400	개포동 807	이종서	
산 107	"	947	효계동 138	강신한		

(3) 토지 매입자 조서 (개포동)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강남구 개포동	473	건	569	북아현동 553	고진명	
	474-1	"	21	돈암동 2-30	권혁소	
	474-2	"	3	북아현동 344	이상집	
	476	"	2,429	개포동 499	석옥환	
	479-1	"	421	" 521	김경수	
	479-2	"	1,627	하월곡동 34-25	공창근외 1인	
	480	"	80	개포동 517	석진세	
	481	답	371	" 495	석종해	
	482	건	500	" "	석태완	
	492	"	1,373	" 512	석종래	
	448	"	66	" 742-2	석종서	
	449	답	575	신사동 196	이명복	
	436-2	"	83	개포동 499	석옥환	
	468	"	1,950	동선동 1가 123	이지호	
	436-1	"	44	신사동 196	이명복	
	470	건	1,190	개포동 503	진기용	
	542	"	3,137	" 504	석후균	

지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 조서
(1) 영년작물 조서

지번	수종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산 97-2	배나무	720	개포동 497	석종명	
산 129	"	47	" 307	이종서	
457	"	232	" 503	석종삼	
산 105-1	복숭아	212	" 504	석후균	
476	배나무	407	" 499	석옥환	

(2) 분묘 조서							
지 번	지 목	구 분	기 수	소 용 작		비 고	
				주 소	성 명		
산 96-1	입	단 장	5	옥석동 29-79	조 진 삼		
산 407	천	"	1	개포동 425	석 태 환		
산 101	입	"	7	금호동 가1475	이 성 범		
산 97-2	"	"	2	개포동 427	석 중 명		
산 102-3	"	"	5	용두동 236-57	김 경 수		
산 109	"	"	1	개포동 307	이 중 서		
산 105-1	"	"	7	" 504	석 후 굴		
산 87	"	"	8	필운동 184-3	어 보 범		
<p>○ 서울특별시고시 제 459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455 호 (77.12.28)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p>				<p>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6)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로구형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12. 29</p> <p>서울특별시 장</p>			
구 분	용 급	로 벨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비 고
신설	중로	2	150	15	300	효자동(대3-120)	철운동(중2-56)
<p>별첨 : 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 제 460 호</p> <p>도시계획시설 (공가지구)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449 호 (77.12.23)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공가지구)</p>				<p>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로구형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12. 29</p> <p>서울특별시 장</p>			

가. 도시계획시설(공지지구) 변경초서

구분	지구명	종별	위치	면적
개정	공지지구	2종	종로구 평창동(북악터널서측)	625,700
변경	"	"	"	615,000
				합 10,700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 특별시공고 제 319 호

토지 구획정리 사업 계획변경
(기간연기) 안가공고

1. 건설부 공고 제 2 호 (76.1.6) 및 서울특별시공고제 324 호 (76.2.30)로 사업계획 변경 (기간연기) 인가된 망우, 김포, 시흥, 신림, 화양추가, 신림추가, 영동제1지구 추가, 천호, 이수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31조 및 제3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되었기에 이를 공고한다.
2.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아니하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7.12.22

서울특별시장

-사업 계획 변경 (기간연기) 인가 내역-

지구명	변경인가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당 초	변 경		
망우지구	1,951,966.7 명	1967.1.21 -1977.12.31	1967.1.21 -1976.12.31	서울특별시장	
김포지구	1,423,560 명	1968.1.23 -1977.12.31	1968.1.23 -1979.12.31	"	
시흥지구	1,736,416 명	1968.1.23 -1977.12.31	1968.1.23 -1979.12.31	"	
신림지구	1,034,555 명	1970.9.3 -1977.12.31	1970.9.3 -1979.12.31	"	
화양추가	464,588 명	1972.3.28 -1977.12.31	1972.3.28 -1979.12.31	"	

지 구 명	변경인가면적	사 업 시 행 기 간		사 업 시 행 자	비 고
		남 초	변 경		
신 립 추 가	27,048.3 명	1972.11.6 -1977.12.31	1972.11.6 -1977.12.31	서울특별시청	
영동제1지구추가	530,645 명	1971.12.28 -1977.12.31	1971.12.28 -1977.12.31	"	
천호지구	780,000 명	1972.11.6 -1977.12.31	1972.11.6 -1977.12.31	"	
이수지구	611,120 명	1972.2.18 -1977.12.31	1972.2.18 -1977.12.31	이수조합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3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91호 (77.11.18) 로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한 영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환경정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등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본 공고 사항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7. 12.

서울특별시청 (환지에정지 변경지점 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54,567.3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반포동 274의 41호 1.3필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5 호

73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실시공고

1. 시험실시 구분 및 일정

운 전 면 허		응시원서접수기간	학과시험실시일정	응시 장소
종 별	구 분			
제 1 등	대 형 특 수	시험일 10일 전부터 근무시간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함	별표참조	서울특별시경찰국 교통과 면허계 (강남구 삼성동 소재)

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기간	학과시험실시일정	응시장소
종별	구분			
제 1종	보통	시험일 10일전부터 근무시간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함	별표참조	서울특별시·경찰국 교통과, 면허제 (강남구삼송동 소재)
제 2종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	매일 실시	'

※ 특수면허의 종류 : 추레카, 레이카, 지게차, 크레인 (고무타이어로 도로를 운행하는 전차량)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 도로법령 및 구조와 취급방법

나. 운전적성시험 : 신체검사 지각반응검사

다. 기능시험 : 굴절곡선, 전후진방향, 전환코스 운전능력과 장거리 운전능력.

3. 응시자격

가. 도로교통법 제 57 조 (면허시험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1960.1.1 이전에 출생한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는 1962.1.1 이전에 출생한 자)

다. 제 1종 대형운전면허증 받으려는 자는 1953.1.1 이전 출생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제 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를 받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응시원서 이면 신체검사시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찰병원 의사의 신체검사통과 받아야함) 1통

나. 주민등록표에 초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통

다. 제 1종 대형면허 응시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하는 3년 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 1통

라. 시험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자는 그에 따른 증명서 1통

마. 운전면허시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

(1)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수수료 5,000원

(2) 원동기장치 자전거시험 수수료 500원

5. 원서 접수처

서울특별시 경찰국 교통과 면허제

6. 기타 생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교통과 면허제 (57-6578, 57-3845, 57-321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7.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운전면허학과시험실시계획								
운전면허		학 과 시 험 과 정						비 고
종 별	구 분							
제 1	보 통	1.19	2.7	2.28	3.23	4.11	4.28	18면 실시
		5.18	6.7	6.28	7.12	8.8	8.30	
		9.19	10.5	10.25	11.14	12.5	12.26	
중 일	대 형	1.13	2.14	3.14	4.6			12면 실시
		5.9	6.16	7.19	8.22			
		9.12	10.18	11.17	12.8			
중	특 수	1.17	2.17	3.17	4.21			. .
		5.12	6.21	7.28	8.25			
		9.29	10.28	11.22	12.23			
제 2	보 통	1.10	1.31	2.22	3.9	3.29	4.18	18면 실시
		5.3	5.24	6.3	7.4	7.25	8.16	
		9.6	9.26	10.12	11.7	11.28	12.19	
중	소 형	3.7	6.2	9.15	12.16			4면 실시
원 동 기		매 일 실 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6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 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1(77.12.9)로 환지 계획 변경공립 공고한 영동 제 2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와 행정규칙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 정지를 변경 지정 하였고 공고 합니다.

2.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본공고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7. 12.

서울특별시

(환지예정지 변경 내역)

가. 사업명: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사업면적: 8421.8명

다. 변경위치: 강남구 압구정동 167-3호 외 25필

서울특별시공고제 327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제 322 호(77.12.9)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본공고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 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1977. 12.

서울특별시

(환지예정지 변경 내역)

가. 사업명: 영동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20,998.3명

다. 변경위치: 강남구 서초동 469의 4호외 97 필지

서울특별시공고제 328 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문화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 2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7. 12.

서울특별시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규격번호	종 명
543	71.7.31	장안공업사	장병환	도봉구미아 10	8302	랩프용 레셋타클
857	73.11.12	일광전기 공업사	유승환	동대문구 장안동 8	102	형광램프용안 정기
처 분 기 산		표시정지사유		기준기달항목		비 고
77.12.28 78.1.27 이후해제처분이 있 을때까지		기준미달		취부구멍 치수초과 이상온도		시장조사 공장검사

서울특별시공고제 329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경인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려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 및 행정권한외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 변경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할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을 합니다.

1977.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내역 : 강서구 신월동 일부토지
3. 변경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



서울특별시제 368 호

물품분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한다.

1977. 12. 27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물품분류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경찰에서 취급하는 각종 물품을 그 용도, 기능, 형상 등에 따라 이를 소모성 물품과 비소모성 물품으로 분류하여 물품관리의 한계를 명확히하고 물품관리의 차질을 없애는데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정의) (1) 소모성 물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하므로서 소모되거나 (사무용품포함)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이에 준하는 공작물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비소모성 물품이라 함은 그 성질, 기능, 형상이 쉽게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 4 조 (물품의분류) (1) 소모성 물품은 별표 1 과 같다.

(2) 비소모성 물품은 별표 2 와 같다.

부 칙

이규정은 197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 모 성 물 품 류

품 명	비 고
1. 사무용소모품류 2. 지 류 3. 인 세 물 4. 청소 및 위생품류 5. 포장품류 6. 연 료 류 7. 목공 자료 8. 공보사진 재료 9. 전기용품류 10. 잡 품 류 11. 기타 소모성 물품 (차량관계 소모품제외)	프린트 및 공판포함 경유, 석유, 연탄 (차량용제외) 전구, 전전지등 전기기구에 부속되는 용품 (자물쇠, 유리제품, 재털이 (도기 및 유리류), 보자기, 화분, 모독류, 철사, 와이어로프, 연봉, 못, 가마니, 찻잔, 세면기, 헝겍자, 운동용 공중류, 의자카바, 식료품류, 약품류, 장반, 주전자, 주판등)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전항 물품에 유사한 소모성물품류

별표 2	
비 스 모 성 불 품 류	
품 명	품 명
1. 카 메 라	24. 전기레스타
2. 스피드그라프	25. 전기 (고대)
3. 환 등 기	26. 피이프 피링기
4. 촬 영 기	27. 토치 램포
5. 영 사 기	28. 기류 (국기, 경찰기등)
6. 필립 (인화) 전조기	29. 서울시경찰국 간판
7. 확 대 기	30. 스크린
8. 교환렌즈	31. 슬라이드 매거진
9. 필립복사기	32. 현상기
10. 전차푸라쉬	33. 절단기
11. 녹 음 기	34. 타이트 스탠드
12. 망 원 경	35. 법전 및 도서류
13. 접 착 기	36. 자외선등
14. 매 가 돈	37. 스탠드
15. 타 자 기	38. 마이크
16. 계 산 기	39. 확성기
17. 거 울	40. 방독면
18. 계 기 계	41. 농접셀트
19. 건 압 제	42. 화일박스
20. 변 류 기	43. 캐비넷
21. 변 압 기	44. 책 장
22. 누전탐지기	45. 서 가
23. 절연측정기	46. 찬 장

47. 문 서 대	74. 탐 지 기
48. 우 포류 발송합	75. 점 사 기
49. 등 사 기	76. 자외선 감척기
50. 공구연삭기	77. 현 미 경
51. 드 릴	78. 현장종합 감척차
52. 자동통제표시기	79. 정전기 죽흔족 채취기
53. 오존발생기	80. 감 청 기
54. 양탄자소계기	81. 방탄조끼
55. 시계 (순찰)	82. 깨스분사기
56. 자개역사록	83. 비 화 기
57. 저 울	84. 컴퓨터 터미날
58. 난 로	85. 극초단파 송, 수신기
59. 선 풍 기	86. 속도 측정기
60. 환 풍 기	87. 약 기 류
61. 소 화 기	88. 전 축
62. 사 다 리	89. 책 상
63. 침 대 류 (목, 철)	90. 외 자
64. 복 사 기	91. 탁 자
65. 음셀트기	92. 고정식 구조대
66. 금 고	93. 경 보 기
67. 에 어 콘	94. 나 침 판
68. 냉 장 고	95. 종
69. 진공청소기	96. 렌 즈
70. 태 레 비	97. 확 대 기
71. 엠 프	98. 자동차검출기
72. 라 디 오	99. 화병 (철제)
73. 교통사고 인명구조기	

100. 매연검진기	112. 탁 자 보
101. 칸 막 이	113. 목 공 도 구
102. 압 막	114. 의 로 기 구
103. 흑 판	115. 기계 기 구 류
104. 라디오 (카라 디오)	116. 번 호 기
105. 늘 것	117. 호 치 키 스
106. 은 도 계	118. 운 동 구 류
107. 라 이 타	119. 신 문 결 이
108. 술 (대형)	120. 칸 막 이
109. 안전점검기구 (셀)	121. 기타전항물품과 유사한 기능물 가진 불충분. 끝.
110. 가 방 류	
111. 천 막	